

문서번호	청소행정과-6777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백혜정	김원식	박현식	손정수	02/26 김병환	
협 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생활쓰레기 절반 줄이기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 추진계획**

2015 . 2 .

**행 정 국  
청소행정과**

# 생활쓰레기 절반 줄이기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 추진계획

‘17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고강도의 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 선순환체계 조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분리배출이 미흡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분리 배출 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I 추진배경

- 쓰레기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근본적 혁신 대책 필요
  - ‘16년 인천시 매립지 사용기간 만료(인천시 직매립 수용불가 입장)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직매립 금지 조항 포함( ‘16년 시행예정)
  - ‘15년부터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
    - ‘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감량 반입
    - 할당량 달성 여부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할당제 도입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32%증가 예상
- 페비닐, 폴리프로필렌(PP) 등 재활용품 처리 신기술 개발에 따른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 필요
-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정채된 쓰레기에 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 ‘종량제봉투에 의한 단순 배출’ ⇒ ‘철저한 분리배출’에 의한 ‘자원재순환’ 실천의식 제고

## II 추진방향

-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 집중 홍보
  - 비닐류, 종이 등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중점 홍보

-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주민의 자발적 협조 유도
- 분리배출이 미흡한 단독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 분리배출 실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일시적 단속보다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추진 효과성 제고
-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로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민주도의 녹색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 유도

### III 생활폐기물 배출 현황

- 배출 및 처리 절차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률 현황( '13년)

(단위:년/톤,%)

총 발생량	매립·소각			재활용 (음식물포함)	비고
	소계	매립	소각		
129,159	40,409	2,677(6.6%)	37,372(93.4%)	88,750(68.7)	재활용률= ( $\frac{\text{재활용량}}{\text{총발생량}} \times 100\%$ )

○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서울시 자치구중 14위이며, 직매립 비율은 6.6%로 서울시 전체 비율(25%) 대비 낮은 수준임

- 직매립 쓰레기중 봉제원단 비율이 80%이며, 1일 10톤 배출 추정

○ 최근 10년간 생활폐기물 배출량 15.8%, 소각·매립량 51.8% 감소하였으나, 종량제봉투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비율이 높으며, 특히 종이, 비닐 등의 혼합 비중이 높음

\* 종량제봉투내 재활용 가능 품목 50% 이상 함유 \*한국환경공간 성상 조사자료

계	종 이	비 닐	플라스틱	음식물	불연물 (병, 캔 등)	고무피혁	기타 가연물
100%	41.7%	17.4%	5.9%	9.4%	9.9%	2.7%	13%

○ 재활용률은 최근 10년 동안 23% 상승하였으나, 최근 5년내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임

## IV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 강화

□ 목 표 : 연차별 목표 설정

○ 생활폐기물 감축 : '16년까지 20% 감축

○ 재활용률 제고 : '16년까지 75% 달성

(단위:년/톤,%)

구 분	'13년	추진목표		비고
		'15년	'16년	
폐기물 발생량	계	40,049	36,044(10%)	32,039(20%)
	매립	2,677	3,604	3,204
	소각	37,372	32,440	28,835
재활용률	68.7	71.8	75	

- '15년 생활폐기물 감축 월별 추진목표 : 연간 10% 감축

(단위:톤)

연간 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6,044	3,004	6,007	9,011	12,015	15,018	18,022	21,026	24,029	27,033	30,037	33,040	36,044

□ 기 간 : 2015. 2월 ~

□ 대 상 : 관내 일반주택 전 가구 및 편의점 등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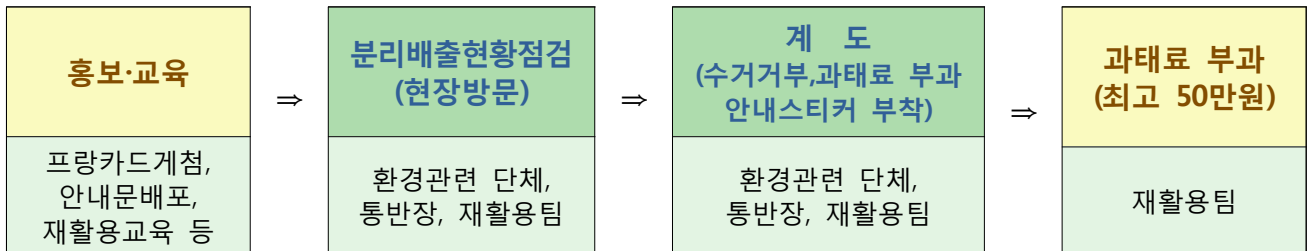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교육 강화

○ 분리배출 위반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강화

□ 방 법 : 녹색환경실천단, 통반장, 여성중앙회 등 주민 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분리배출 집중 홍보 및 계도

□ 절 차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소요항목

- 안내문, 스티커, 플래카드 제작 등 : 20,000천원

- '분리배출 착한가게' 표지판 제작 등 : 5,000천원

○ 예산과목

-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자원재활용사업지원, 일반운영비 : 15,000천원

-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일반운영비 : 10,000천원(예산변경)

## V 세부추진계획

### 1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교육 실시

#### □ 홍보 안내문 제작·배포

##### ○ 안내문 제작

- 수량 : 12만부

- 사양

■ 용지 : 300g/m<sup>2</sup> SW지

■ 인쇄 : 4도 단면인쇄, 무광코팅 후 도무송(원하는 모양으로 재단)

■ 기타 : 후면 자석 부착

- 내용 : 종이·폐비닐 분리배출 등 주요홍보사항,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요일, 분리배출 위반시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배포 : 일반주택 전 세대 및 상가

■ 통,반장 활용 전가정, 상가 방문, 안내문 배포 및 분리수거 홍보

##### ○ 스티커 제작

- 수량 : 1만부

- 사양 : 코팅지 2도 인쇄 64절 사이즈

- 내용 : 혼합배출 ‘수거거부’, 수거 거부일, 수거 예정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포스터 제작

- 수량 : 1천부

- 사양 : 코팅지 4도 인쇄 8절 사이즈

- 내용 : 종이·폐비닐 등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 부착 : 동 주민센터 민원실, 관내 편의점, 대형건물 등

##### ○ 플래카드 제작·게첨

- 수량 : 총 405개

- 동별 평균 20개소, 관내 주요거점 5개소(성북천 난간, 지하철역 입구 등), 가로게시대 4개소
- 사양
  - 이면도로 게첨용 : 가로형(4~5m×0.6m)
  - 동청사 게첨용 : 세로형(1.2m×7m)
  - 주요 거점, 가로게시대용 : 가로형(7m×0.9m)
- 게첨 : 동별 면적, 일반주택 가구수 등 고려 게첨 수량 조정  
문안예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분리배출만이 살 길입니다!!**

**비닐과 종이는 반드시 재활용 봉투에 넣어주세요!**

**2015. 3월부터 단속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2241-4415, 동 주민센터)**



**쓰레기 분리배출, 선택이 아니라 의무!**

**종량제 봉투속 비닐과 종이를 꺼내어 재활용 봉투에 넣어주세요!**

**2015. 3월부터 단속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2241-4415, 동 주민센터)**



**재활용품, 음식물 분리배출! 선택이 아닌 필수!**

**종량제 봉투에 비닐등 재활용품 혼합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15. 3월부터 단속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2241-4415, 동 주민센터)**



**수도권매립지쓰레기포화,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매립연장은 불가!**

**재활용 분리배출만이 살 길입니다.**

**2015. 3월부터 단속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2241-4415, 동 주민센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포화! 버릴 곳 없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아직도 안하고 계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로 해결됩니다.**

**2015. 3월부터 단속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2241-4415, 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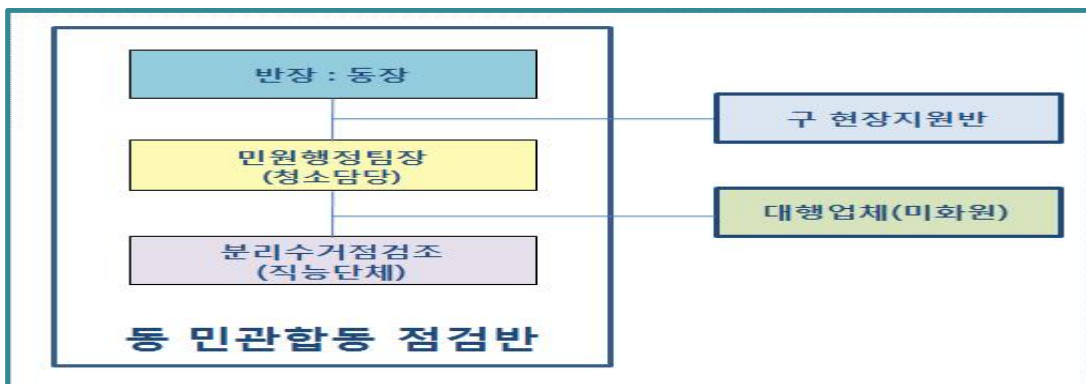
- 동 주민센터 전광판, 구 청사내 전자홍보액자 게시
  - 동 주민센터 전광판 :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문구 송출
  - 구 청사 전자홍보액자 : 안내문 송출
- 홍보매체 및 SNS를 통한 홍보
  - 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3월 ~
  - 웹진, 성북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 3월 ~ (주1회)
  - 반상회보,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게재 의뢰
- 주민리더 분리배출 교육
  - 대상 : 통반장,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주민리더
  - 일시 : 단체별 회의시
  - 방법 : 각동 동장 및 청소담당이 안내문 배포, 교육
    - \* 초등학교 대상 분리수거, 환경교육 하반기 별도계획에 의거 시행
- 재활용 분리배출 직원교육용 새울행정시스템 배너 제작
  - 사무실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준수 교육



☞ 새울시스템 우측 상단 게시,  
클릭시 분리배출 안내문 링크

## 2 민관 합동 분리수거 실태 점검반 구성

- 구성체계





○ 동 민관합동 점검반

- 반장 : 동장
  - 분리배출 교육·홍보 및 동 분리배출 강화 업무 총괄
- 점검·계도총괄 : 민원행정팀장(청소담당)
  - 점검계획 수립, 실적보고 등 세부 사항 총괄
- 점검조 : 동 구역별 단체회원, 청소담당 3인 1조(동별 여건에 따라 자율 편성)
  - 참여단체 : 클린성북봉사단, 녹색환경실천단, 여성중앙회, 비둘기봉사회 등  
직능단체 및 봉사단체

○ 구 현장지원반(동 담당제 시행)

- 구성인원 : 42명(재활용팀 및 청소행정팀 내근직원 9명, 청소차 운전 직원 33명 등)
- 동별 2 ~ 3명 배치, 현장업무지원 및 진행상황 점검

○ 수거대행업체(미화원)와의 협조체계 구축

- 해당지역 분리배출 상습 미이행가구 리스트 제공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종량제봉투 수거 보류

### 3 분리수거 실태 점검 및 계도

□ 점검활동 : 점검조별 점검구역 지정, 어깨띠·단체별 조기 착용 후 점검

□ 점검방법

○ 일반주택

- 전 지역 현장방문 전수 점검, 분리배출 미흡, 상습 무단투기 민원발생 지역 우선점검
- 봉투 해체 후 성상조사, 혼합배출여부 확인
-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스티커 부착
  - 재활용품 20%이상 혼합배출 가구(배출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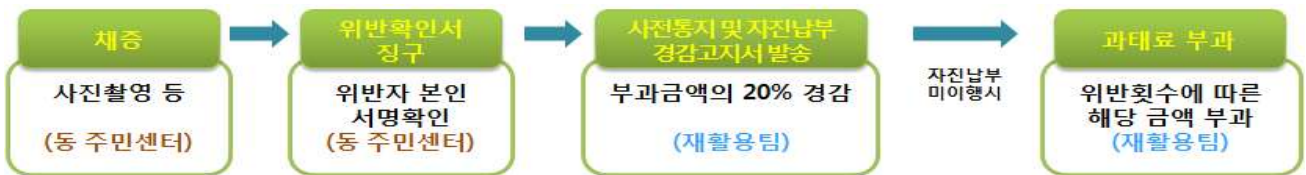
○ 편의점 및 소규모 상가

- 분리배출 이행 실태점검, 위반시 현장계도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분리배출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 ‘분리배출 착한가게’ 표지판 부착
  - 구청장 표창 수여(재활용문화조성 유공 분야)
- 대규모 건물 및 다량배출사업장
- 재활용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 연2회 컨설팅 제공(별도계획 수립)

#### 4 과태료 부과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11조, 3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 대상
  - ‘수거거부’ 스티커 연속 3회 부착 가구, 상가
  - 분리수거 미이행 민원발생 가구, 상가
- 금액 :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
  -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 절차



## VI 동 주민센터 보고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 현황 보고(동 주민센터)
- 플래카드 게첨장소 보고(동 주민센터)
- 분리배출 홍보·계도 실적 보고(주1회)
- 활동지역, 참여단체,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실적 보고 및 과태료 부과회피
  - \* 보고 일정 및 양식 추후 시달

- 동 순회 홍보 실시(재활용팀) : 2월 ~ 3월
  - 재활용팀장이 동장, 민원행정팀장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강화 홍보
- 홍보물 및 어깨띠 제작·배포 : 3월중
  - (제작) 청소행정과, (배포) 동 주민센터
- 동 민원행정담당주사 회의 소집(재활용팀) : 3월중
- 동별 분리배출 강화 추진 실적 평가 : 월1회
  - 스티커 부착 실적, 과태료 부과, 동별 종량제봉투사용량 감소실적(판매실적) 등
- 구 현장지원반 추진상황 복명 : 동 현장지원시 매회
- 분리배출 홍보자료 게재(홈페이지, 반상회보, 웹진 등) : 홍보담당관
- 예산변경 : 기획예산과

붙임 : 1)폐기물관리조례 과태료 1부  
 2)위반 확인서 1부  
 3)스티커 부착 대장 1부  
 4)구 현장지원반 명단 1부. 끝.